



시 보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선 람	기관의 장

제37호 2022. 5. 13(금)

고 시

- 남원시고시 제2022-51호 남원 도시관리계획(소로2-729호선, 왕치초등학교)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 남원시고시 제2022-54호 남원 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3

공 고

- 남원시공고 제2022-1088호 공고문(김종섭)----- 8
- 남원시공고 제2022-1088호 공고문(김택곤)----- 9
- 남원시공고 제2022-1088호 공고문(노문규)----- 10
- 남원시공고 제2022-1088호 공고문(신진호)-----11
- 남원시공고 제2022-1088호 공고문(임경주)-----12
- 남원시공고 제2022-1088호 공고문(장임길, 장갑길)-----13
- 남원시공고 제2022-1098호 공시송달공고-----15
- 남원시공고 제2022-1102호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8
- 남원시공고 제2022-1114호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32
- 남원시공고 제2022-1119호 공시송달공고-----39
- 남원시공고 제2022-1126호 남원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고문-----42
- 남원시공고 제2022-1128호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47
- 남원시공고 제2022-1131호 남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62

회 람										
----------------	--	--	--	--	--	--	--	--	--	--

남원시 고시 제2022-51호

남원 도시관리계획(소로2-729호선, 왕치초등학교)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남원 도시관리계획(소로2-729호선, 왕치초등학교) 경미한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고시 합니다. 관계도서는 남원시 도시과(☎063-620-6452)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남 원 시 장
2022년 5월 13일

1. 남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729	8	국지 도로	89	소로2-728 금지면 옹정리 266-6답	금지면 옹정리 820-2답	일반 도로	금지옹정 취락지구	전라북도고시 제1983-15호 (1983.1.29)	
변경	소로	2	729	8	국지 도로	89	소로2-728 금지면 옹정리 266-6답	금지면 옹정리 820-2답	일반 도로	금지옹정 취락지구	전라북도고시 제1983-15호 (1983.1.29)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2-729호선	소로2-729호선	◦ 가각부 변경	◦ 도로 개설 현황에 맞춰 불필요한 가각부 제척하 고자 금회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나.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²)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505	학교	초등학교 (왕치초)	용정동 111 일원	13,039	감)500	12,539	남원시고시 제2010-34호 (2010.8.13)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505	초등학교 (왕치초)	◦ 면적 변경 - 13,039m ² → 12,539m ² (감 500m ²)	◦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에 따라 금회 도시계획시설 (학교) 변경

2. 남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도 :

“실음생략”

남원시 고시 제2022 - 54호

남원 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남원 관광지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52조 제6항 및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 고시하고, 관련도서를 남원시 관광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남 원 시 장
2022년 5월 13일

1. 남원 관광지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남원관광지 지정 규모 : **“변경”**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	남원 관광지	남원시 노암동, 어현동, 신촌동 일원	909,510	감) 58,296	851,214	85.10.10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조서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	시 설 명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909,510	감)58,296	851,214	100.0	
공공편익 시설지구	76,266	감)427	75,839	8.9	• 관리사무실, 주차장, 화장실, 도로, 버스정차대
숙박 시설지구	43,144	감)8,811	34,333	4.0	• 콘도미니엄, 국민호텔, 여관
상가 시설지구	32,003	증)204	32,207	3.8	• 종합상가, 매점, 제작전시판매장, 기념품판매장, 고음식점, 저자거리, 대중음식점, 전통찻집, 전문음식점, 전망대
관광휴양 오락시설지구	387,636	감)52,231	335,405	39.4	• 눈썰매장, 인공암벽장, 공술장, 어린이놀이시설, 모노레일, 예술회관, 국악원, 전통혼례장, 야외공연장, 피크닉장, 동백연축전시관, 춘향촌, 박물관, 전통민속놀이체험장, 약수체험장, 보트장, 정자, 공연장
기타 시설지구	370,461	감)2,969	373,403	43.9	• 사찰, 가압펌프장, 조경휴게지, 녹지, 주체다리, 범선, 일주문, 승월교, 고갯길 체험장, 랜드마크, 수림터널 및 담장체험장, 승월대, 인공폭포

다. 시설지구별(변경) 조서

시설지구	번호		시설명		토지이용계획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시설수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909,510	감)58,296	851,214	87,448.9	증)99.24	87,548.14	198,870.9	증)1,180.58	200,051.48	118	증)70	188
공공 편의 시설 지구	소 계				76,266	감)427	75,839	893.0	증)18.0	911.0	1,015.0	증)18.0	1,033.0	23	증)1	24
	1-1	1-1	관리 사무실	관리 사무실	1,740	감)686	1,054	383.0	-	383.0	505.0	-	505.0	2	-	2
	1-2	1-2	주차장	주차장	주차장1	17,017	증)8,097	-	-	-	-	-	-	11	-	11
		1-3			주차장2				4,266	-		-	1	-	1	
		1-4			주차장3				4,082	-		-	1	-	1	
		1-5			주차장4				1,525	-		-	1	-	1	
	1-3	1-6	화장실	화장실	1,849	감)560	1,289	510.0	증)18.0	528.0	510.0	증)18.0	528.0	6	증)1	7
	1-4	1-7	도로	도로	55,660	감)7,278	48,382	-	-	-	-	-	-	-	-	-
	-	1-8	버스 정차대	버스 정차대	-	-	-	-	-	-	-	-	-	1	-	1
소 계					43,144	감)8,811	34,333	10,893.0	감)1,652.0	9,241.0	48,057.0	감)8,257.0	39,800.0	15	감)1	14
숙박 시설 지구	2-1	2-1	콘도 미니엄	콘도 미니엄	11,571	감)281	11,290	2,314.0	-	2,314.0	11,571.0	-	11,571.0	1	-	1
	2-2	2-2	국민호텔	국민호텔	6,017	감)68	5,949	1,204.0	-	1,204.0	6,017.0	-	6,017.0	1	-	1
	2-3	2-3	여관1	여관1	11,961	감)250	11,711	3,588.0	-	3,588.0	17,942.0	-	17,942.0	7	-	7
	2-4	2-4	여관2	여관2	5,338	증)45	5,383	2,135.0	-	2,135.0	4,270.0	-	4,270.0	5	-	5
	2-5	-	콘도 미니엄/ 호텔	-	8,257	감)8,257	-	1,652.0	감)1,652.0	-	8,257.0	감)8,257.0	-	1	감)1	-
소계					32,003	증)204	32,207	12,187.0	증)220.0	12,407.0	33,345.0	증)660.0	34,005.0	47	증)3	50
상가 시설 지구	3-1	3-1	종합상가	종합상가	7,590	감)152	7,438	3,036.0	-	3,036.0	15,180.0	-	15,180.0	4	-	4
	3-2	3-2	매점	매점	343	감)25	318	137.0	-	137.0	137.0	-	137.0	7	-	7
	3-3	3-3	제작전시 판매장	제작전시 판매장	6,106	감)28	6,078	2,137.0	-	2,137.0	4,274.0	-	4,274.0	8	-	8
	3-4	3-4	기념품 판매장	기념품 판매장	2,818	감)21	2,797	986.0	-	986.0	1,972.0	-	1,972.0	2	감)1	1
	3-5	3-5	고유 음식점	고유 음식점	2,955	증)346	3,301	1,034.0	-	1,034.0	2,068.0	-	2,068.0	6	-	6
	3-6	3-6	저자거리	저자거리	3,348	감)400	2,948	1,762.0	-	1,762.0	3,524.0	-	3,524.0	11	-	11
	3-7	3-7	대중 음식점	대중 음식점	4,000	감)53	3,947	1,400.0	-	1,400.0	2,800.0	-	2,800.0	4	증)2	6
	3-8	3-8	전통찻집	전통찻집	420	감)9	411	147.0	-	147.0	294.0	-	294.0	4	감)3	1
	3-9	3-9	전문유흥 음식점	전문유흥 음식점	4,423	감)72	4,351	1,548.0	-	1,548.0	3,096.0	-	3,096.0	1	증)4	5
	5-7	3-10	-	전망대	-	증)618	618	-	증)220.0	220.0	-	증)660.0	660.0	-	증)1	1

시설 지구	번호		시설명		토지이용계획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시설수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관광 휴양 · 오락 시설 지구	소계				387,636	감)52,231	335,405	45,130.9	증)1,282.4	46,424.14	81,206.9	증)8,719.58	89,926.48	14	증)67	81
	4-2	4-1	눈썰매장	눈썰매장	8,555	감)198	8,357	715.0	-	715.0	715.0	-	715.0	1	-	1
	-	4-2	-	인공 압벽장	-	증)1,530	1,530	-	증)284.0	284.0	-	증)104.0	104.0	-	증)1	1
	4-3	4-3	궁술장	궁술장	10,004	감)627	9,377	988.0	-	988.0	988.0	-	988.0	1	증)1	2
	5-1	4-4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14,123	감)312	13,811	2,825.0	-	2,825.0	2,825.0	-	2,825.0	1	증)11	12
	-	4-5	-	모노레일	-	증)1,502	1,502	-	증)448.7	448.7	-	증)1,113.76	1,113.76	-	증)1	1
	5-2	4-6	예술회관	예술회관	10,604	감)79	10,525	3,181.0	증)422.63	2,758.37	3,362.0	증)1,508.52	4,870.52	1	-	1
	5-3	4-7	국악원	국악원	14,304	증)8	14,312	4,291.0	증)1,011.02	5,302.02	8,582.0	증)6,020.65	14,602.65	1	-	1
	5-4	4-8	전통 혼례장	전통 혼례장	4,558	감)74	4,484	1,595.0	-	1,595.0	3,190.0	-	3,190.0	1	-	1
	5-5	4-9	야외 공연장	야외 공연장	1,491	감)35	1,456	-	-	-	-	-	-	1	-	1
	5-6	-	광장	-	13,723	감)13,723	-	1,517.8	감)1,517.8	-	1,517.8	감)1,517.8	-	1	-	1
	5-7	-	전망대	-	629	감)629	-	-	-	-	-	-	-	-	-	-
	5-8	4-10	피크닉장	피크닉장	5,301	감)921	4,380	288.0	-	288.0	576.0	-	576.0	1	-	1
	5-9	4-11	동백연죽 전시관	동백연죽 전시관	960	감)12	948	288.0	-	288.0	576.0	-	576.0	1	-	1
	5-10	4-12	춘향촌	춘향촌	64,879	감)23	64,856	26,596.1	감)8.1	26,588.0	53,183.1	감)8.1	53,175.0	1	증)46	47
	5-11	4-13	박물관	박물관	8,169	감)24	8,145	1,634.0	-	1,634.0	3,268.0	-	3,268.0	1	-	3
	5-12	4-14	전통 민속놀이 체험장	전통 민속놀이 체험장	2,710	감)129	2,581	542.0	-	542.0	1,084.0	-	1,084.0	1	-	1
	5-13	4-15	약수 체험장	약수 체험장	3,349	감)821	2,528	670.0	-	670.0	1,340.0	-	1,340.0	1	증)1	2
	4-1	4-16	보트장	보트장	224,277	감)45,035	179,242	-	-	-	-	-	-	1	증)2	3
-	4-17	-	정자	-	증)175	175	-	-	-	-	-	-	-	증)2	2	
-	4-18	-	공연장	-	증)7,844	7,844	-	증)1,517.75	1,517.75	-	증)1,517.75	1,517.75	-	-	-	

시설 지구	번호		시설명		토지이용계획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시설수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타 시설 지구	소계				370,461	증)2,969	373,430	18,345.0	증)220.0	18,565.0	35,247.0	증)40.0	35,287.0	19	-	19
	6-1	5-1	사찰1	사찰1	4,701	증)32	4,733	940.0	-	940.0	940.0	-	940.0	1	-	1
		5-2	사찰2	사찰2	1,061	감)16	1,045	212.0	-	212.0	212.0	-	212.0	1	-	1
	6-2	5-3	가압 펌프장	가압 펌프장	316	-	316	64.0	감)64.0	-	64.0	감)64.0	-	1	-	1
	6-3	5-4	조경 휴게지1	조경 휴게지1	40,827	증)1,618	42,445	16,862.0	증)284.0	17,146.0	33,764.0	증)104.0	33,868.0	-	증)2	3
	6-4	5-5	조경 휴게지2	조경 휴게지2	7,736	감)306	7,430	-	-	-	-	-	-	1	감)1	-
	6-5	5-6	조경 휴게지3	조경 휴게지3	23,420	증)2,658	26,078	119.0	-	119.0	119.0	-	119.0	1	감)1	-
	6-14	5-7	조경 휴게지4	조경 휴게지4	1,035	증)169	1,204	-	-	-	-	-	-	1	감)1	-
	6-15	5-8	조경 휴게지5	조경 휴게지5	1,127	증)406	1,533	-	-	-	-	-	-	1	감)1	-
	6-16	5-9	조경 휴게지6	조경 휴게지6	443	감)1	442	-	-	-	-	-	-	1	감)1	-
	6-6	5-10	녹지	녹지	289,795	감)2,879	286,916	90.0	-	90.0	90.0	-	90.0	-	증)2	2
	6-7	5-11	주체다리	주체다리	-	-	-	-	-	-	-	-	-	1	-	1
	6-8	5-12	범선	범선	-	-	-	-	-	-	-	-	-	2	-	2
	6-9	5-13	일주문	일주문	-	-	-	58.0	-	58.0	58.0	-	58.0	4	-	4
	6-10	5-14	승월교	승월교	-	-	-	-	-	-	-	-	-	1	-	1
	6-11	5-15	고갯길 체험장	고갯길 체험장	-	-	-	-	-	-	-	-	-	1	-	1
	6-12	5-16	랜드마크	랜드마크	-	-	-	-	-	-	-	-	-	1	-	1
	6-13	5-17	수림터널 및 담장 체험장	수림터널 및 담장 체험장	-	-	-	-	-	-	-	-	-	1	-	1
	-	5-18	-	승월대	-	증)868	868	-	-	-	-	-	-	-	-	-
-	5-19	-	인공폭포	-	증)420	420	-	-	-	-	-	-	-	-	-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남원 관광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m ²)	구 성 비(%)	비 고
합 계	851,214	100.0	
자연녹지지역	851,214	100.0	

3. 지형도면 승인·고시도면 : 실음생략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지 제20호서식]

공 고 문

공 고 제2022-1088호

확인서 발급 신청인	성명(법인명) 김종섭	생년월일(등록번호) 530826-1*****
	부동산의 표시 전라북도 남원시 대강면 방동리 877 주1 1층 목조 주택 48㎡ 부1 1층 목조 창고 25.61㎡	
	취득사유 매매, 증여	
	공고기간 2022년 5월 9일 ~ 2022년 7월 8일(2개월)	
대장상 소유자	성명(법인명) 진영	생년월일(등록번호) 210917-1*****
등기 명의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등록번호)

위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항을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일

남 원 시 장



유 의 사 항

1.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2. 이의신청은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지 제20호서식]

공 고 문

공 고 제2022-1088호

확인서 발급 신청인	성명(법인명) 김택곤	생년월일(등록번호) 620311-1*****
	부동산의 표시 전라북도 남원시 주천면 은송리 427-6 주1 1층 목조/시멘트기와 주택 28.4㎡ 부1 1층 목조/스레이트 창고 15.6㎡	
	취득사유 증여	
	공고기간 2022년 5월 9일 ~ 2022년 7월 8일(2개월)	
대장상 소유자	성명(법인명) 김용기	생년월일(등록번호) 181110-1*****
등기 명의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등록번호)

위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항을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일

남 원 시 장



유 의 사 항

1.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2. 이의신청은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지 제20호서식]

공 고 문

공 고 제2022-1088호

확인서 발급 신청인	성명(법인명) 노문규	생년월일(등록번호) 420907-1*****
	부동산의 표시 전라북도 남원시 대강면 옥택리 532-1 주1 1층 목조/기와 주택 46.97㎡ 부1 1층 목조 창고 18.27㎡	
	취득사유 매매	
	공고기간 2022년 5월 9일 ~ 2022년 7월 8일(2개월)	
대장상 소유자	성명(법인명) 김태님	생년월일(등록번호) 360116-2*****
등기 명의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등록번호)

위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항을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일

남 원 시 장



유의사항

1.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2. 이의신청은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지 제20호서식]

공 고 문

공 고 제2022-1088호

확인서 발급 신청인	성명(법인명) 신진호	생년월일(등록번호) 700304-1*****
	부동산의 표시 전라북도 남원시 주생면 정송리 424 주1 1층 목조 주택 11.6㎡ 부1 1층 블록/세멘기와 창고 7.9㎡	
	취득사유 증여	
	공고기간 2022년 5월 9일 ~ 2022년 7월 8일(2개월)	
대장상 소유자	성명(법인명) 서귀삼	생년월일(등록번호) 111119-2*****
등기 명의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등록번호)

위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항을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일

남 원 시 장



유의사항

1.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2. 이의신청은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지 제20호서식]

공 고 문

공 고 제2022-1088호

확인서 발급 신청인	성명(법인명) 임경주	생년월일(등록번호) 570808-1*****
	부동산의 표시 전라북도 남원시 산동면 월석리 376 주2 1층 목조/스레트 주택 45.9㎡ 주2 1층 목조/세와 주택 31.6㎡ 부1 1층 목조/스레트 창고 18.2㎡	
	취득사유 매매, 증여	
	공고기간 2022년 5월 9일 ~ 2022년 7월 8일(2개월)	
대장상 소유자	성명(법인명) 황성철	생년월일(등록번호) 260518-1*****
등기 명의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등록번호)

위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항을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일

남 원 시 장



유 의 사 항

1.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2. 이의신청은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지 제20호서식]

공 고 문

공 고 제2022-1088호

확인서 발급 신청인	성명(법인명) 장임길(1/2), 장갑길(1/2)	생년월일(등록번호) 570516-1***** 541212-1*****
	부동산의 표시 전라북도 남원시 대강면 신덕리 614-1 주1 1층 목조 정미소 76.47㎡ 부1 1층 목조/스레트 창고 34.78㎡ 부2 1층 목조/기와 주택 50.3㎡	
	취득사유 증여	
	공고기간 2022년 5월 9일 ~ 2022년 7월 8일(2개월)	
대장상 소유자	성명(법인명) 임만박	생년월일(등록번호) 220322-2*****
등기 명의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등록번호)

위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항을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일

남 원 시 장



유의사항

1.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2. 이의신청은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지 제21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공고기간 만료일 부터 2개월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부동산	소재지	지목	면적(㎡)	

위의 부동산은 본인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년 월 일 가 확인서 발급신청을 했다는 공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별첨 소명서류와 같이 위 부동산은 본인의 소유임이 명백한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인의 소유임을 소명할 수 있는 관련 소명서류	수수료 없음
------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장소관청(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합니다)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 공고 제2022 - 1098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에 따라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에게 말소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말소처리를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5. 9. ~ 2022. 5. 24. (15일간)
2. 공고장소 : 남원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시송달 내용

처분의 제목	소유자 현황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성 명	주 소		위 치	건축물현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말소일 : 2022.5.6.)	서순달	남원시 산내면 장항리 828-1	건축물 부존재	남원시 산내면 장항리 828-1	주1 목조 주택 30.9㎡ 부1 목조 창고 14.9㎡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만료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남원시청 건축과 (☎063-620-659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5. 6.

남 원 시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전라북도 남원시 건축과 건축지원담당
 - 연락처 : 063) 620-6597

남원시 공고 제 2022 - 1102호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2조 및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09일

남 원 시 장

1. 개정이유

『소상공인 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을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근거법령 변경사항 반영 및 용어 정비(안 제2조)
- 나. 청년 소상공인 창업에 대한 사업지원 규정 마련(안 제3조, 안 제4조)
 - 창업 소상공인 창업 특례보증 한도: 5,000만원 이내
- 다. 이차보전금 이자율 및 기간 확대(안 제6조)
 - 이차보전금 이자율: 연 2퍼센트 이내 ⇒ 연 3퍼센트 이내
 - 이차보전 기간: 3년 이내 ⇒ 3년 이내 <단서 신설>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상공인지원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대 2년' 연장 가능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5월 29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일자리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의견 제출할 곳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일자리경제과) (우 55738)
 -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063-620-6712), 직접방문 등

4. 기타

-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일자리경제과(☎063-620-63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소상공인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나.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

다.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

마.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

7. “창업”이란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8. “청년 소상공인”이란 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한 청년으로서 제1호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청년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 특례보증 한도는 5,000만원 이내로 한다.

제3조의2제1항제4호 중 “법 제4조”를 “법 제6조”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영위”를 “경영”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청년 소상공인은 창업일 현재 남원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자로 할 수 있다.

제6조제2항 중 “2퍼센트”를 “3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이차보전 지원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상공인지원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대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2022. 5.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일자리경제과장

1. 개정이유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을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거법령 변경사항 반영 및 용어 정비(안 제2조)

나. 청년 소상공인 창업에 대한 사업지원 규정 마련(안 제3조, 안 제4조)

- 창업 소상공인 창업 특례보증 한도: 5,000만원 이내

다. 이차보전금 이자율 및 기간 확대(안 제6조)

- 이차보전금 이자율: 연 2퍼센트 이내 ⇒ 연 3퍼센트 이내

- 이차보전 지원 기간 연장 사유 규정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상공인지원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대 2년' 연장 가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소상공인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5. . ~ 2022. 5. .(20일간)

2) 비용추계서: 불입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소상공인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나.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

다.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

마.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

7. “창업”이란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8. “청년 소상공인”이란 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한 청년으로서 제1호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청년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 특례보증 한도는 5,000만원 이내로 한다.

제3조의2제1항제4호 중 “법 제4조”를 “법 제6조”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영위”를 “경영”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청년 소상공인은 창업일 현재 남원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자로 할 수 있다.

제6조제2항 중 “2퍼센트”를 “3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이차보전 지원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상공인지원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대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소상공인”이란 「<u>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u>」(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사업자를 말한다.</p> <p>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을 말하되, 「<u>농업협동조합법</u>」·「<u>수산업협동조합법</u>」에 따른 조합, 「<u>상호저축은행법</u>」에 따른 저축은행과 「<u>새마을금고법</u>」에 따른 지역금고를 포함한다.</p> <p>3. ~ 6. (생략)</p> <p><신설></p> <p><신설></p>	<p>제2조(정의) ----- -----.</p> <p>1. ----- 「<u>소상공인기본법</u>」----- ----- -----.</p> <p>2.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p> <p>가. 「<u>은행법</u>」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p> <p>나. 「<u>농업협동조합법</u>」·「<u>수산업협동조합법</u>」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p> <p>다. 「<u>신용협동조합법</u>」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p> <p>라. 「<u>상호저축은행법</u>」에 따른 저축은행</p> <p>마. 「<u>새마을금고법</u>」에 따른 지역금고</p> <p>3. ~ 6. (현행과 같음)</p> <p>7. “<u>창업</u>”이란 <u>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u></p> <p>8. “<u>청년 소상공인</u>”이란 <u>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한 청년으로</u></p>

현행	개정안
<p>제3조(특례보증 지원) ①·② (생략)</p> <p><u><신설></u></p> <p>③ (생략)</p>	<p><u>서 제1호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u></p> <p>제3조(특례보증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p> <p><u>③ 청년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 특례보증 한도는 5,000만원 이내로 한다.</u></p> <p><u>④ (현행 제3항과 같음)</u></p>
<p>제3조의2(경영안정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4. <u>법 제4조</u>에서 정한 소상공인의 날 행사 지원</p> <p>5.·6. (생략)</p> <p>② (생략)</p>	<p>제3조의2(경영안정 지원) ① -----</p> <p>-----</p> <p>-----</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법 제6조</u>-----</p> <p>-----</p> <p>5.·6.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조(지원 대상) ① (생략)</p> <p>② 제3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사업신청일 기준 3년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해당 사업을 3년 이상 <u>영위</u>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u><단서 신설></u></p>	<p>제4조(지원 대상)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p> <p>----- <u>경영</u>-----</p> <p>----- <u>. 다만, 청년 소상공인은 창업일 현재 남원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자로 할 수 있다.</u></p>
<p>제6조(이차보전 지원) ① (생략)</p>	<p>제6조(이차보전 지원) ① (현행과 같</p>

현 행	개 정 안
<p>② 이차보전금의 이자율은 <u>연 2퍼센트</u>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은 대출은행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p> <p>③ 이차보전 기간은 <u>3년 이내로 한다.</u></p> <p>④ (생략)</p>	<p>음)</p> <p>② ----- <u>연 3퍼센트</u> -----.</p> <p>③ 이차보전 지원 기간은 <u>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상공인지원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대 2년을 연장할 수 있다.</u></p> <p>④ (현행과 같음)</p>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재정수반요인

-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 확대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자 함.

○ 관련조문

-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특례보증 지원)
-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이차보전 지원)

2. 비용 추계결과

○ 비용추계의 전제

- 청년 소상공인 창업에 대한 특례보증
-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금 기간 및 이자율 확대

○ 비용추계의 결과

- 연간 예산 계획: 194,000천원 [※ 2022년도 전체 예산]
 -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100,000천원
 -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94,000천원

- 연도별 예산 추계 (단위:천원)

연도	합계	2022	2023	2024	2025	비고
총 비용	1,014,000	194,000	255,000	280,000	285,000	
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금	550,000	100,000	150,000	150,000	150,000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금	464,000	94,000	105,000	130,000	135,000	

3. 재원 조달 방안

- 재원조달계획 : 전액 시비 편성

4. 그 밖의 사항

- 작 성 자 :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붙임

관련 법규

■ 소상공인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소상공인의 책무) ① 소상공인은 자주적인 노력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영업활동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상공인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협조하고 상호 간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소상공인 주간)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 인식의 제고,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소상공인의 날로 하고 소상공인의 날 이전 1주간을 소상공인 주간으로 한다.

제29조(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재창업 지원

2. 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

3.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나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시설이나 장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p>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2년 월 일</p> <p>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p> <p>남원시장 귀하</p>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공고 제2022 -1114호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2조 및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0일

남 원 시 장

1. 개정이유

임시시장 관리자의 업무 위탁 범위를 넓히고, 전통시장 직영매장 신청 자격에서 진입규제 조항을 완화하여 규제 혁신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임시시장 관리자의 업무 위탁 범위 추가 (안 제21조)
- 나. 직영매장 운영 신청 자격 규제 완화 (안 제24조~제25조)

3. 입법예고기간 : 2022. 5. 10. ~ 2020. 5. 30. (20일간)

4. 의견제출

-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0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일자리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3) 의견 제출할 곳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일자리경제과)
- 4)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063-620-6712), 직접방문 등

5. 기타

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일자리경제과(☎063-620-63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2022. 5. .
 제출자: 남원시장
 제안설명자: 경제농정국장

1. 개정이유

임시시장 관리자의 업무 위탁 범위를 넓히고, 전통시장 직영매장 신청 자격에서 진입규제 조항을 완화하여 규제 혁신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임시시장 관리자의 업무 위탁 범위 추가 (안 제21조)
- 나. 직영매장 운영 신청 자격 규제 완화 (안 제24조~제2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나.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5. . ~ 5. . (20일간)
 -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기타 시장이 전통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 중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과 청년 중에서 직영매장 설치를 희망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게 할 수 있다.”를 “직영매장 설치를 희망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제25조 중 “시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자로 한정하며, 농어민은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로 한다.”를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로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으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해당되어 **비용추계 작성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제3조(작성대상)

-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남원시 공고 제2022 - 1119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에 따라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에게 말소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말소처리를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5. 12. ~ 2022. 5. 27. (15일간)
2. 공고장소 : 남원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시송달 내용

처분의 제목	소유자 현황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성 명	주 소		위 치	건축물현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말소일 : 2022.5.2.)	김○옥	남원시 아영면 의지리 156	건축물 부존재	남원시 아영면 의지리 229 외 1필지	주1층 목조 주택 35.3㎡ 주1층 목조 주택 8.4㎡ 부1층 목조 창고 17.5㎡

4. 기타사항

- 가. 공고기간 만료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나. 기타 문의사항은 남원시청 건축과 (☎063-620-659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5. 10.

남 원 시 장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전라북도 남원시 건축과 건축지원담당
 - 연 락 처 : 063) 620-6597

남원시 공고 제2022 - 1126호

남원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고문

「남원시 시민의 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1일

남 원 시 장

1. 제정이유

남원시민의 장 선발 부문별 최적임자를 선발하기 위해 복수부문을 개별부분으로 세분화하고, ‘남원시민의 장’ 영예에 합당한 예우조항을 마련하여 수상자의 예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문화체육장’을 ‘문화장’과 ‘체육장’으로, ‘효열봉사장’을 ‘효행장’과 ‘봉사장’으로 부문 분리하여 규정 (안 제2조, 제3조)
- 나. ‘남원시민의 장’ 수상자 예우조항을 신설 (안 제7조의2)
- 다. 그 밖에 어문규정에 맞는 정비 (안 제6조, 안 제7조)

3. 입법예고기간 : 2022. 5. 11. ~ 2022. 5. 31 (2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주요내용 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1) 우편번호 : 55738
- (2) 주 소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행정지원과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063-620-6063), 남원시 홈페이지(<http://www.namwon.go.kr/>), 직접 방문 등

5.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행정지원과(☎063-620-60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남원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붙임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에 관한 의견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남원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2022. 5.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행정지원과장

1. 개정이유

남원시민의 장 선발 부문별 최적임자를 선발하기 위해 복수부문을 개별부분으로 세분화하고, ‘남원시민의 장’ 영예에 합당한 예우조항을 마련하여 수상자의 예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문화체육장’을 ‘문화장’과 ‘체육장’으로, ‘효열봉사장’을 ‘효행장’과 ‘봉사장’으로 부문 분리하여 규정 (안 제2조, 제3조)
- 나. ‘남원시민의 장’ 수상자 예우조항을 신설 (안 제7조의2)
- 다. 그 밖에 어문규정에 맞는 정비 (안 제6조, 안 제7조)

3. 참고사항

- 가. 입법예고
 - 기 간: 2022. 5. . ~ 2022. 6. .(20일간)
 - 결 과:
- 나.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 다.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민의 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시민의장”을 “시민의 장”으로 하고, 같은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문화장
2. 효행장
5. 봉사장
6. 체육장

제3조 제목외의 부분 “시민의장”을 “시민의 장”으로 하고,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문화장: 교육, 예술, 언론 등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한 사람
2. 효행장: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미풍양속을 실천하여 주민의 칭송을 받는 사람
3. 산업노동장: 새로운 기술 보급과 생산성을 높이는 등 지방산업 보호 육성과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사업장 또는 직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로서 맡은 바 직무에 창의력을 발휘하여 노동환경 개선에 기여한 사람
4. 애향장: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출신 출향인으로서 고향의 발전과 화합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한 사람
5. 봉사장: 공공사업, 사회산업, 그 밖의 봉사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였거나, 각종 시민운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살기 좋은 지역사회 개발에 기여한 사람

6. 체육장: 시민의 체력증진에 공헌하였거나 시민체육의 명예를 대내외에 빛나게 하는데 기여한 사람

제6조 후단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7조 중 “수상적격자가”를 “수상자격에 적합한 사람이”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수상자의 예우) 시장은 시민의 장 수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

1. 남원시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 부여
2. 수상부문과 관련된 시정관련 위원회 위원 위촉
3. 시 주관 행사 초청 및 귀빈 예우
4. 관내에 소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
5. 그 밖에 포상의 영예성과 수상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시민의장) 남원시민의 장(이하 “시민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p> <p>1. <u>문화체육장</u></p> <p>2. <u>효열봉사장</u></p> <p>3. 4. (생략)</p> <p><신설></p> <p><신설></p>	<p>제2조(시민의 장) -----</p> <p>-----</p> <p>-.</p> <p>1. <u>문화장</u></p> <p>2. <u>효행장</u></p> <p>3. 4. (현행과 같음)</p> <p>5. <u>봉사장</u></p> <p>6. <u>체육장</u></p>
<p>제3조(수여대상) <u>시민의장</u> 부문별 수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p> <p>1. <u>문화체육장은 교육, 예술, 언론 등 향토문화 창달에 기여하였거나 시민의 체위향상에 공헌하고 남원시 체육의 명예를 드높인 사람</u></p> <p>2. <u>효열봉사장은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미풍양속을 실천하여 귀감이 되었거나, 공공사업, 사회산업, 그 밖에 봉사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한 사람</u></p> <p>3. <u>산업노동장은 새로운 기술 보급과 생산성을 높이는 등 지방산업 보호육성과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사업장 또는 직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로서 맡은 바 자기 직무에 창의력</u></p>	<p>제3조(수여대상) <u>시민의 장</u>-----</p> <p>-----</p> <p>---.</p> <p>1. <u>문화장: 교육, 예술, 언론 등 향토 문화 발전에 기여한 사람</u></p> <p>2. <u>효행장: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미풍양속을 실천하여 주민의 칭송을 받는 사람</u></p> <p>3. <u>산업노동장: 새로운 기술 보급과 생산성을 높이는 등 지방산업 보호육성과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사업장 또는 직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로서 맡은 바 자기 직무에 창의력</u></p>

현 행	개 정 안
<p>때에는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u><신 설></u></p>	<p><u>사람이 -----.</u> <u>제7조의2(수상자의 예우) 시장은 시민</u> <u>의 장 수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u> <u>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u> <u>1. 남원시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u> <u>부여</u> <u>2. 수상부문과 관련된 시정관련 위원</u> <u>회 위원 위촉</u> <u>3. 시 주관 행사 초청 및 귀빈 예우</u> <u>4. 관내에 소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u> <u>료 감면</u> <u>5. 그 밖에 포상의 영예성과 수상자</u> <u>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시장이</u> <u>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u></p>

남원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제3조(작성대상)

-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과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남원시 공고 제2022-1128호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2조 및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11일

남 원 시 장**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 개정이유**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자금지원 대상을 포괄적으로 확대하고 융자신청 서류 및 이차보전 대상을 명확히 하여 규제완화 및 중소기업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에 따른 인용조항 반영(안 제1조, 제16조)
- 나.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안 제2조제3항)
- 다. 자금지원 대상의 확대(안 제6조)
- 라. 융자신청 서류와 이차보전 대상의 명확화(안 제8조, 제11조)

3. 입법예고기간 : 2022.05.11. ~ 05.31. (20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2년 05월 31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기업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기업지원과(별관 1층)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이메일(gksjojo@korea.kr), fax(063-620-6773) 및 직접방문 등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담당(☎063-620-66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2022.05.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기업지원과장

1. 개정이유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자금지원 대상을 포괄적으로 확대하고 융자신청 서류 및 이차보전 대상을 명확히 하여 규제완화 및 중소기업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에 따른 인용조항 반영(안 제1조, 제16조)
- 나.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안 제2조제3항)
- 다. 자금지원 대상의 확대(안 제6조)
- 라. 융자신청 서류와 이차보전 대상의 명확화(안 제8조, 제11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 나.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기 간: 2022.05. . ~ 06. . (20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 4)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42조 및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조”를 “제159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의 제목 “(용자대상업체)”를 “(자금지원 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용자대상업체는”을 “자금 지원대상은 자금 지원 신청일 현재”로, “주사무소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제조업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체 및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7조의 용자계획 공고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11조제2항 중 “제6조제6호의”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으로, “유망중소기업 인증업체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업체는”을 “우수중소기업인상을 수상한 기업 및 전라북도 유망중소기업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조에 따라 남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제159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 ----- ----- ----- -----.</p>
<p>제2조(기금의 설치) ①·② (생략)</p> <p><신 설></p>	<p>제2조(기금의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6조(용자대상업체) 용자대상업체는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사무소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p> <p>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입주업체</p>	<p>제6조(자금지원 대상) 자금 지원대상은 자금 지원 신청일 현재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제조업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체 및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p> <p><삭 제></p>

현 행	개 정 안
2. <u>유망 중소기업체</u>	<삭 제>
3. <u>지방 특화산업체</u>	<삭 제>
4. <u>국민소득증대 및 고용효과가 큰 업체</u>	<삭 제>
5. 「 <u>중소기업협동조합법</u> 」에 따라 <u>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 사업</u>	<삭 제>
6. 「 <u>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u> 」 제2조에 따른 <u>벤처기업</u>	<삭 제>
7. <u>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u>	<삭 제>
제8조(융자신청) ① 융자를 받으려는 업체의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신청) ① ----- ----- ----- -
1. 2. (생 략)	1. 2. (현행과 같음)
3. <u>중소기업 증명자료</u>	3. <u>제7조의 융자계획 공고에서 요구하는 서류</u>
제11조(이차보전 지원) ① (생 략)	제11조(이차보전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차보전금의 이자율은 3퍼센트 이내로 하며, <u>제6조제6호의 벤처기업과 전라북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업체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업체</u> 는 1퍼센트이내에서 추가로 지원한다.	② ----- ----- <u>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u> ----- ----- <u>우수중소기업인상을 수상한 기업 및 전라북도 유망중소기업은</u> ----- -----.

현 행	개 정 안
<p>③ ~ ⑦ (생 략) 제16조(결산 및 보고) ① (생 략)</p> <p><u>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p> <p>③ (생 략)</p>	<p>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6조(결산 및 보고) ① (현행과 같음)</p> <p><u>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u></p> <p>③ (현행과 같음)</p>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으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해당되어 **비용추계 작성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제3조(작성대상)

-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붙임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

2.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3.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세의 징수유예

② 정부는 시·도지사가 육성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기금에 대한 지원금을 육성계획을 추진하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

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① “벤처기업”이란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7. 8. 3.>

② “투자”란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

부사채를 인수하거나, 유한회사의 출자를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 8. 3.>

③ 삭제 <2006. 3. 3.>

④ “벤처기업집적시설”이란 벤처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7. 8. 3.>

⑤ “실험실공장”이란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에 해당하는 업종의 생산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07. 8. 3.>

⑥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란 벤처기업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 집단화·협업화(協業化)를 통한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8조의4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7. 8. 3.>

⑦ “전략적제휴”란 벤처기업이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기술·시설·정보·인력 또는 자본 등의 분야에서 다른 기업의 주주 또는 다른 벤처기업과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 8. 3.>

⑧ “신기술창업전문회사”란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와 이를 통한 창업 촉진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7. 8. 3.>

⑨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이란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교지나 부지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와 벤처기업 등에 사업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1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7. 8. 3.>

⑩ “소셜벤처기업”이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제16조의8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21. 4. 20.>

[제목개정 2007. 8. 3.]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 8. 3., 2009. 5. 21., 2010. 1. 27., 2011. 3. 9., 2014. 1. 14., 2016. 3. 22., 2016. 3. 29., 2016. 5. 29., 2018. 12. 31., 2019. 1. 8., 2020. 2. 11.>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5) 삭제 <2020. 2. 11.>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8)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를 보유한 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다만,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기준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 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다.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창업 중인 기업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2. 11.>

[전문개정 2007. 8. 3.]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p>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2년 월 일</p> <p>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p> <p>남원시장 귀하</p>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공고 제2022 - 1131호

남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공고문

「남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2일

남 원 시 장

1. 제정이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제29조에 따라 남원시 각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회의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운영원칙, 설치, 기능 규정(안 제1조~안 제5조)
- 나. 주민자치회의의 구성 및 운영 규정 (안 제6조~제17조)
- 다. 주민자치회의의 위원 관련 사항 규정 (안 제18조~22조)
- 라. 시장의 지원,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보칙 등 규정 (안 제 23조 ~제27조)

3. 입법예고기간 : 2022. 5. 12. ~ 2022. 6. 1. (2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주요내용 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1) 우편번호 : 55738
- (2) 주 소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행정지원과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063-620-6063), 남원시 홈페이지(<http://www.namwon.go.kr/>), 직접 방문 등

5.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행정지원과(☎063-620-60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남원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 붙임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의견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남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2022. 5. .
 제출자: 남원시장
 제안설명자: 행정지원과장

1. 제정이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제29조에 따라 남원시 각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회의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운영원칙, 설치, 기능 규정(안 제1조~안 제5조)
- 나. 주민자치회의의 구성 및 운영 규정 (안 제6조~제17조)
- 다. 주민자치회의의 위원 관련 사항 규정 (안 제18조~22조)
- 라. 시장의 지원,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보칙 등 규정 (안 제 23조 ~제2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 나.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기간 : 2022. 5. . ~ 2022. 6. . (20일간)
 - 결과 :
 -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 4) 성별영향분석평가: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9조에 따라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각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 및 시범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각 읍·면·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면·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참여하여 주민자치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의 장을 말한다.
4. “마을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 3. 읍·면·동별 자율적인 운영
-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읍·면·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③ 시장은 관할지역 내 인구·면적 등 지역여건상 분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 주민자치회가 요청하는 경우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주민자치 업무: 주민총회 개최, 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 2. 협의업무: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 3. 수탁업무: 시와 읍·면·동 행정기능 중 자치사랑방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25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10조1항의2에 따른 추천 또는 제10조1항의1에 따른 공개 모집한 날 현재 만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면·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1년 이상 등재 된 사람
3. 해당 읍·면·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1년 이상 종사하는 사람(사업자등록증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 가능한 사람)
4. 해당 읍·면·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근거 법령에 따라 법인설립 등기를 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의 1년 이상 속한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다만, 고문으로 참여 가능하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2. 시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제9조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4. 다른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5.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6.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로 위촉이 해제된 사람으로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8조(권한) 주민자치회는 읍·면·동의 행정기능에 속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1. 협의 권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읍·면·동과의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읍·면·동 기능에 대한 협의 권한
- 2. 수탁 권한: 자치사랑방 운영 등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처리 권한
- 3. 주민자치회 관련 권한 : 주민총회 개최, 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주민자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

제9조(위원추첨관리위원회) ① 위원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을 위한 절차 진행 및 관리를 위해 해당 읍·면·동 내에 위원추첨관리위원회(이하 “추첨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첨위원회 위원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7명 이내로 구성하여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 1. 읍·면·동장 추천: 2명 이내(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3명 이내로 한다)
- 2. 관내 각급 학교·기관 및 단체 추천: 2명 이내(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4명 이내로 한다)
- 3. 주민자치회에서 추천: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3

명 이내

③ 추첨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추첨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추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읍·면·동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대상자 자격 유무 확인
2.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 절차 진행 및 관리
3.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의 명단 작성 및 공표 등
4.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0조제4항에 따른 예비후보자 명단 작성

⑥ 추첨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제2항에 따라 새로 위촉한다.

제10조(위원의 선정 및 위촉)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제9조의 추첨위원회에서 공개 추첨하여 선정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전체 위원의 10분의 6 이상
2. 해당 읍·면·동 소재 각급 학교·기관·단체 및 그밖에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아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전체 위원의 10분의 4 이하
3. 다만, 제1호에 의한 공개모집 선정 미달 시 제2호에 의한 추천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위원을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란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사람을 의미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10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⑤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시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다.

⑧ 시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해야 하며,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

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⑨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위원 추천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⑩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읍·면·동장이 정한다.

⑪ 시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 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2명 이상 경쟁 시에는 무기명 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하여 다수 득표자를 선출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2조(간사)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사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互

選)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14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互選)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5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읍·면·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읍·면·동의 다음연도 마을계획안
4. 읍·면·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5. 그 밖에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등을 진행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상정 안건 홍보를 위한 홍보물품 등을 제작하여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 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면·동의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및 해당 읍·면·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읍·면·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⑧ 의사정족수, 사전투표 반영비율 등 기타 주민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6조 (마을계획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마을계획안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읍·면·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읍·면·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7. 그 밖에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마을계획안은 주민총회에 부쳐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마을계획안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시장은 주민의 공론인 마을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적·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마을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 30일 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해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의해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마을계획을 확정·의결하고, 확정된 마을계획을 읍·면·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제17조(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주민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읍·면·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한 때

3. 위원의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읍·면·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

으며, 읍·면·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분과회의, 분과장 회의 개최 등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3장 주민자치회의 위원

제18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폭 넓은 의견 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
2.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또는 활동 참여
3. 제14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1개 이상 참여 및 활동
4. 연간 주민자치 관련 교육, 연수 등 3시간 이상 참여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해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안 된다.

제19조(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20조(위원의 임기) ① 자치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다시 선출될 수 없다.

② 부회장, 감사, 간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제10조제7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연임할 수 있는 위원은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 교육을 새로운 주민 자치회가 구성되기 전 임기 내에 6시간 이상 이수한 위원만 해당한다.

제21조(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 위촉을 해제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사임한 경우
4.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직선거법」상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위원에 대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주민자치회에 해당 위원의 위촉 해제를 발의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시장에게 해당 위원의 위촉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 위원이 사임 또는 제22조 각 항에 따라 해촉된 경우 해당 위원은 같은 임기 내 재위촉될 수 없다.

제4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

제23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읍·면·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써 읍·면·동 주민참여예산기구, 사회보장협의체 등 주민참여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읍·면·동장 및 자치회장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읍·면·동 소속공무원이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⑦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

여금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5조(감독)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6조(보험) 시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7조(운영세칙)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기간(행정안전부에서 제도 도입 시행 이전)까지 효력이 있다.

제3조(적용례) ①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운영은 주민자치회 전환 또는 설치에 동의한 읍·면·동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자치사랑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자치사랑방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4조(경과조치) ①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남원시 자치사랑방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의 정관·재산 등을 승계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전환된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붙임

관련법령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제28조(주민자치회의 기능) ①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19.>

1. 국가 및 시·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군·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도위원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

1. 직종·직급·고용형태별 남녀 직원 현황

2. 관리직 남녀 비율 현황

3. 남녀 직원 근속연수 현황

4. 승진 대상자 중 남녀의 승진 비율

5. 남녀 관리직에 대한 연도별 임용 목표 및 달성 시기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남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시행규칙 일부개정예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으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해당되어 **비용추계 작성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제3조(작성대상)

-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